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7
----------	-----

제출년월일 : 2014. .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주택법 개정으로 인하여 사업승인대상 건축물 일부가 건축법 적용을 받도록 변경되어 건축법에 의한 허가대상건축물과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공동주택 경관개선사업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연결조문과 용어 정비로 주민들에게 정확한 내용 전달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비, 오타자 정정 및 띄어쓰기 등으로 조례 정비

나.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4조(적용범위)

- 건축법에 따라 사용검사된 15세대 이상의 분양주택도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 공동주택과 관련된 법령의 신설 또는 개정으로 인하여 의무적으로 개·보수 하여야 하는 시설과,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경관개선사업에 대하여는 10년 경과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5조(지원대상)

- 주거용 건축물의 공유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
- 공동주택 발코니 화분 설치 및 옥상 조명 설치등의 공동주택 경관 개선사업에 대하여는 비용은 8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3항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법」 제43조제8항

-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12.5. ~ 2013.12.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을 “조례는 「주택법」 제43조제8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규정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다. 그 밖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3조로 한다.

제3조(중전의 제4조) 중 “관할구역내에 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관할 구역 내의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으로, “사용검사를 득하여 건립된 20세대”를 “건축허가를 득한 후 사용검사를 받은 15세대”로, “한한다”를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동주택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적 개·보수사업과 제5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경관개선사업에 대하여는 10년 경과 규정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제4조(중전의 제3조) 중 “지원을 위하여”를 “지원에”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단지내”를 “단지 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주거용 건물의 공동시설”을 “공유시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발코니 화분 설치 및 옥상 조명시설에 한하여 공동주택 경관개선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80퍼센트 이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용한 때”를 “사용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중지한 때”를 “중지한 경우”로 한다.

제9조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적정성 여부”를 “적정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

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하여 11인”을 “1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기타 위원회”를 “그 밖의 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제13조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갖고있”을 “갖고 있”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인정하는 때”를 “인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를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로,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허위보고”를 “거짓보고”로, “차기”를 “다음번”으로 한다.

제16조 중 “기타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 및 「평창군 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u>조례는 「주택법」</u> 제43조제8항의 <u>규정에 의한</u> 공 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 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 여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조례는 「주택법」</u> <u>제43조제8항에 따라</u> ----- ----- ----- ----- ----- ----- ----- -----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u>정의는 다음 각호와</u> 같다.</p> <p>1.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 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2호에 <u>규정한</u> 주택을 말한다.</p> <p>2.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 을 관리하는 다음 각목의 자 를 말한다.</p> <p>가. <u>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u> <u>의한</u> 자치관리기구의 대표 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 소장</p> <p>나. <u>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u> <u>의한</u> 주택관리업자</p>	<p>제2조(정의) ----- ----- <u>뜻은 다음과</u> --- ----- -.</p> <p>1. ----- ----- ----- <u>따</u> <u>른</u> -----.</p> <p>2. ----- ----- -----.</p> <p>가. <u>법 제43조제4항에 따른</u> - ----- ----- -----</p> <p>나. <u>법 제53조제1항에 따른</u> <u>주택관리업자</u></p>

다. 가목 내지 나목외의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평창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
· 시행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평창군 관할구역내에 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를 득하여 건립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주택에 한한다. <단서 신설>

제5조(지원대상)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50퍼센트 이하의 금액을 예

다. 그 밖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

----- 지원에 -----
-----.

제3조(적용범위) -----
--- 관할 구역 내의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 건축허가를 득한 후 사용검사를 받은 15세대-----

--- 적용한다. 다만, 공동주택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적 개·보수사업과 제5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경관개선사업에 대하여는 10년 경과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1. 단지내 도로, 보도 및 보안등 보수

2. 3. (생략)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외 공동시설

② (생략)

<신설>

제6조(지원 신청 등) ①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

범위

1. 단지 내

2.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공유시설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발코니 화분 설치 및 옥상 조명시설에 한하여 공동주택 경관개선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80 퍼센트 이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등) ①

각

호

다.

1.·2. (생략)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
출근거

4.·5. (생략)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② (생략)

제7조(지원결정 및 통보) ① (생
략)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
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한다.

제8조(사정변경에 의한 지원결정
취소 등) ① (생략)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관리비용지원결정을 전부 또
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
다.

1. (생략)

2.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

1.·2. (현행과 같음)

3. ----- 필요한 -----

4.·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결정 및 통보) ① (현행
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 해당 -----
-----.

제8조(사정변경에 의한 지원결정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 각 호
-----.

1. (현행과 같음)

2. -----
----- 사용한 경우

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4. 5. (생략)

제9조(지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에 의거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동주택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평창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2. (생략)

3. 기타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3. -----
----- 중지한 경우

4. 5. (현행과 같음)

제9조(지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

----- 아니 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

----- 각 호-----

1. -----
----- 적정성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위원은 군의회 의원 1인,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과장, 안전건설과장, 도시주택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건축·토목·조경·공동주택관리 등 관련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기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 제10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당해 공동주택 단지

----- 1명을 포함하여 11명 -----.

② (현행과 같음)

③----- 1명-----

-----.

④----- 해당 -----

- 그 밖의 위원 -----

전임자 임기의 나머지 기간-----
-----.

제13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 해당 -----

내에 거주하는 경우

- 2. 위원이 당해 공동주택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를 갖고있는 경우

제14조(회의 및 수당 등) ①위원 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③ (생략)

④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보고 등) ①지원금을 교부 받은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 추진 실적, 사업비정산 및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 해당 -----

----- 갖고 있-----

제14조(회의 및 수당 등) ①-----

-----.

- 1. ----- 인정하는 경우
- 2. ----- 1 이상-----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
----- 예산의 범위에
서 수당 -----
-----.

제15조(보고 등) ①-----

----- 그 밖에 -----

② (생략)

③군수는 관리주체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
나 제2항의 검사거부 및 허위보
고를 한 경우에는 차기 지원사
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6조(준용) 예산지원 및 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
하였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 및
「평창군 재무회계규칙」의 관
계규정을 준용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거짓보고-----
--- 다음번 -----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준용) -----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평창군 재무회
계 규칙」-----.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노후된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및 공동주택 경관개선을 위한 사업비의 50%~80%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3조제5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차기년도 사업계획을 신청 받은 후 군의 재정형편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므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연락처	(033) 330 -2470